

일반대학원 학사안내(수강신청 관련)

대학원에서 연구와 수업에 전념하시는 전체 교수님들께 드리는 공지 사항입니다.

1. 수료연구생 “등록” 및 “수료연구지도” 이수 시행

2014년 1학기부터 대학원 수료생 전체(기 수료생 포함)를 대상으로 매학기 “등록” 및 지도교수의 “수료연구지도” 이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(국책사업 지원 관련 운영 포함).

가. 등록방법

- 1) 매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기간에 “등록”하며, 수강신청기간에 “수료연구지도 (DKK600-00)” 교과목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함
- 2) 수료연구생 “수료연구지도” 학기의 매학기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7%이며,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의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12%를 납부함

구 분(해당학기)	금 액	등록금명칭
수료연구 지도학기	계열별 수업료의 7%	수료연구등록금
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	계열별 수업료의 12%	학위청구등록금

나. 성적부여

해당 학생(수료연구생)을 지도하고 성적입력 기간 중 성적을 P/F로 입력

다. 수료생(미 등록생 지칭)은 수료연구생의 권리를 제한함

→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71조(수료연구생의 권리)

- 1)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2) 연구 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.
- 3)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(도서관 및 실험실습실)을 이용할 수 있다.
- 4) 소정의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5)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연구경력을 인정하여 수료연구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6)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7) 수료연구 등록을 한 학생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.

2. 지도교수 지정과목 시행

신입생 중 타전공출신자에게 부여하던 “선수과목”제도가 폐지되고, 2010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“지도교수 지정과목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※ 주의 : 과목 취득 시 전공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않고 성적표에 따로 표기

가.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9조 (지도교수 지정과목)

- 1) 입학자는 입학 첫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정한다.
- 2) “지도교수 지정과목”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으로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지정 또는 면제의 지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제 1항에 따른 입학자의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5과목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.
- 4)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는 수강신청 시 그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1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전공 이수학점 및 평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
나. 시행방법

지도교수가 신입생의 지도교수신청 승인과 함께 개강 전 학생과 면담하여 지정과목을 정하여 주시면 개강 후 첫 주에 학생이 포탈시스템에 면담 결과를 입력하고, 지도교수는 학생이 출력하여 가져온 지정서에 승인하여 주시면 됩니다.

(이수 후 이 과목은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성적표에 따로 표기됩니다)

3. 교수-자녀간 수강 및 성적 공정성 제고 방안 시행

교원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, 학과와 학교 본부에서 그에 관하여 파악하고 수업 운영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교수-자녀간 수강 및 성적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시행됩니다. 따라서 상기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강신청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사실을 주임교수님께 신고하시어 대학원행정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의2(교원 자녀간 강의 수강)

- 1)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주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주임교수는 이를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한 후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「학사운영 규정」제7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- 4)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4.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안내

가. 수강 대상: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

나. 수강신청방법: 수강신청기간 또는 정정기간에 희망자에 한하여 개인별 수강신청

전공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분반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수강정정 하시면 됩니다. (문의: 학부대학행정팀 02-3290-1086)

다. 대학원에 배정된 수강 신청 인원이 모두 찰 경우 수강신청불가

라. 학점(시간) : 학부의 한국어 강좌와 동일하게 3학점 6시간으로 개설

마. 졸업자격 외국어시험(한국어) 면제 인정 불가

바. 세종캠퍼스 문의 : 044-860-1901